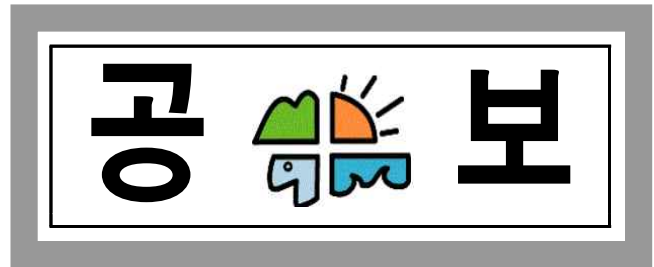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98호 2023년 11월 10일(금)

공고

- 속초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따른 공인 등록 2
-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3
-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6

입법예고

-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속 초 시 장

1. 공인 등록 사유

— 속초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최초사용일	비고
등록	속초시고향사랑기금운용관인		2.0×2.0cm	2023. 11. 8.	
등록	속초시고향사랑기금출납원인		1.8×1.8cm	2023. 11. 8.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
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
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소하천(외옹치천)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속초시 대포동29번지 일원(대포동 소류지~농공단지 사거리)
- 다. 시 행 자: 속초시장
- 라. 사업기간: 2023. 8. 4.~2024. 8. 2.
- 마. 사업내용: 외옹치천 호안 및 교량 시설물 등 정비
 - 하천정비 L=1.035km, 소교량 3개소

2.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가. 열람 기간: 2023. 11. 10.~2023. 11. 27. (17일간)
- 나. 열람 장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
-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o.kr)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토지출입 내용

-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붙임 편입토지 조서 참조
- 다. 출입기간: 2023. 8. ~ 사업종료시까지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가. 붙임 조서 별도 기재
- 나. 보상 대상은 추후 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 가. 보상시기: 2023년 12월 이후(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나. 보상가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결정
- 다.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라. 보상계획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협의시: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 보상금지급(공탁) → 소유권 이전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본 공고에 포함된 토지는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 물건 및 지장물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033-639-253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소하천(외웅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외웅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소하천(외웅치천)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속초시 대포동29번지 일원(대포동 소류지~농공단지 사거리)
- 다. 시 행 자: 속초시장
- 라. 사업의 종류: 소하천 정비사업
- 마. 사업규모: 소하천 정비 L=1.035km, 교량 3개소 정비
 - 편입토지(사유지): 12필지, 275㎡
- 바. 사업기간: 2023. 8. 4.~2024. 8. 2.

2.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가. 열람 기간: 2023. 11. 10.~2023. 11. 27. (17일간)

나. 열람 장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 균형발전팀
-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o.kr)

다. 열람내용: 설계도서 및 사업 관련 서류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건설과 균형발전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균형발전팀(☎033-639-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시장, 병원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근거 및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이유, 시설물 설치현황 등 보호구역 현황 공표를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도로관리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019
FAX ☎033-639-24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3-639-2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장소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

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